

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

의안
번호

309

발의년월일 : 2000. 7. 28

제 의 자 : 의 장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50조, 제78조 및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- 위원회구성 및 총수
 - 위원수 : 5명
 - 구 성 : 각 상임위원회 1~2명(운영위원회 제외)
- 존속기간 : 의결일로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
- 위원선임 : 위원선임은 의장에 위임